

#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4
----------	------

제출년월일 : 2002. 4.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제안이유

- 환경보전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금활용을 통한 환경개선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등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취지를 극대화 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용도에 이자차액 보조사업 및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구입에 따른 용자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을 신설함 (안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 나. 기금의 용자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를 추가함 (안 제4조의2제1항).
- 다.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 대기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을 용자받은 기업체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보전하여 주는 이자차액을 제외하고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4조의4제1항 신설).
- 라. 환경관리공단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개선자금을 용자받은 기업체에 대하여 기업체 부담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4조의4제2항 신설).

## □ 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2. 3. 19. ~ 3. 30.

□ 기타 참고 사항

○ 환경보전기금용도 확대 검토보고(방침결정)

○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천연가스버스 보급 계획서

##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안산의제21과 관련된 사업”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융자금”을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 사업”으로 하며,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 구입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보조 사업

제4조의2의 제목 “융자대상 및 조건”을 “보조·융자대상 및 조건”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4조제1항제4호”를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융자”를 “융자 및 이자차액보조”로 하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음에 “및 안산시내에 사업장이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를 삽입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제4조의3을 제4조의5로 하고,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보조 및 융자신청)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4 (이자차액 보조사업 등) ①시장은 제4조의2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경기도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융자받을 경우 경기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받는 이자차액을 제외하고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4조의2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대기환경보

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보조액은 제4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전을 범위이내에 한하며, 융자 금융기관은 시 금고와 동일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액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융자결정서를 첨부하여 융자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환경 보호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환경보호과장 정 내 관
	담당·팀장 직위·성명	환경관리담당 이 장 원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장 원 (행정 2877)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생 략)</li> <li>3. <u>상록도시안산21 환경보전행동계획과 관련된 사업</u></li> <li>4. <u>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u>유자금</u></u> <u>&lt;신 설&gt;</u></li> <li>5. (생 략)</li> </ol> <p>② (생 략)</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u>안산의제21과 관련된 사업</u></li> <li>4. ----- -----<u>유자 및 이자차액보조 사업</u></li> <li>5. <u>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 구입에 따른 유자 및 이자차액보조 사업</u></li> <li>6. (현행 제5호와 같음)</li> </ol>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 (유자대상 및 조건) ①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자대상은 안산시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lt;삭 입&gt;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제4조의2 (보조·유자대상 및 조건) 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u>유자 및 이자차액보조</u>----- ----- -----<u>및 안산시내에 사업장이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u>----- -----</p>
<p>1. ~ 3.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선&gt;</u></p>	<p>4.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u>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u></p>
<p><u>&lt;신.설&gt;</u></p>	<p>제4조의3 (보조 및 융자신청)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u>&lt;신.설&gt;</u></p>	<p>제4조의4 (이자차액 보조사업 등) ①시장은 제4조의2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경기도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융자받을 경우 경기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받는 이자차액을 제외하고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제4조의2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